㈜클라우드 침해사고관리지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문서로서 검토되고 숭인됨	구분	직위	성명	일자	서명
	승인	정보보호 최고책임자	홍길동	2019.01.01	
	검토	정보보호 담당자	장길산	2019.01.01	

㈜클라우드 물리적 보안지침

2019. 01. 01

㈜클라우드

문서 제ㆍ개정 이력						
번호	날짜	쪽	내용	담당자		
1	2019-01-01	-	최초 작성	홍길동		

본 문서는 침해사고관리지침에 대한 예시이며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 형태,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㈜클라우드의 「정보보호정책서」에 의거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 등에 대해 물리적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 지침은 회사의 안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회사의 시설 및 정보통신설비에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적용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① "보호구역"이라 함은 비밀 또는 중요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물리적 경계 내의 모든 영역을 말한다. (예: 사무실 등)
 - ② "일반구역" 이라 함은 보호구역 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을 말한다.
 - ③ "제한구역"이라 함은 회사 내부에 외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장소로서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의미하며, 일반구역을 제외한 회사 전체구역이 이에 해당된다.
 - ④ "통제구역"이라 함은 서버 등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와 같이 중요시설물 및 기밀자료 등을 운용하거나 보관하는 곳을 말하며,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. (예: 전산실, 문서고 등)
 - ⑤ "출입통제시스템" 이라 함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별 출입통제 기능과 출입에 대한 로그 기록 및 이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. 개인에 대한 인식은 지문 등의 생체정보나 카드 등을 사용한다. 이 지침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카드를 사용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의미한다.
 - ⑥ "휴대용저장매체"라 함은 디스켓(FD), 이동형 하드디스크(HDD), USB 메모리, Flash 메모리, CD(Compact Disk), DVD(Digital Versatile Disk) 또는 IC칩 등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보통신망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.
- 제4조(책임 및 역할) ① 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
 - 2. 통제구역 출입권한에 대한 최종 승인
 - ② 물리적 보안담당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설비 설치
 - 2. 제한구역 출입자에 대한 ID카드 발급, 변경, 삭제 관리
 - 3. 제한기록 출입기록 유지
 - 4. 공용 사무기기 관리
 - ③ 정보보호담당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전산실 출입설비에 대한 관리
- 2. 전산실 출입자에 대한 출입권한 등록, 변경, 삭제 관리
- 3. 전산실 출입기록 유지 및 검토

제2장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

- 제5조(물리적 보호구역의 구분) ① 중요 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 구역(예: 주요 정보처리 설비 및 시스템 구역, 사무실, 외부인 접견실 등)을 지정하고, 각보안 구역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각 구역에 대한 의미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구역 :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제외한 회사 내 모든 구역(예 : 접견구역, 회의실 등)
 - 2. 제한구역 : 비 인가자의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통제가 필요한 구역(예 : 사무실 등)
 - 3. 통제구역 : 인가 받은 자 이외의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(예 : 전산실, 통신장비실, 관제실, 전원실 등)
- 제6조(물리적 보호구역의 통제 방안) ① 일반구역의 출입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 - 1. 업무 및 그 외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의 경우에는 일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만 출입할 수 있다.
 - ② 제한구역의 출입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 - 1. 비 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설치 및 운영한다.
 - 2. 출입통제를 위해 ID카드 등의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한다.
 - 3. 퇴직, 전환배치 등으로 접근권한이 변경된 임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해제한다.
 - 4. 제한구역으로 반출입 되는 가방, 서류, 기타 휴대용 전산 장비 등은 필요 시 검색할 수 있다.
 - 5. 외주업체 직원의 제한 구역 내 출입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, 제한 구역 내 장기간 출입할 경우, 담당 직원에 의해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.
 - ③ 통제구역의 출입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 - 1. 최소한의 인가된 인원들에 대해서만 출입이 통제되고 출입통제시스템과 CCTV 등을 설치 및 운영한다.
 - 2. 통제구역에 상시로 출입하는 인원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인원으로 제한한다. 그 외의 외부인력 등이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별도 승인을 받고 담당자의 인도하에 통제구역에 출입한다.

- 제7조(출입권한 통제)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해 출입이 필요한 직원은 출입권한 신청 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(팀)장의 승인을 득한 후 물리적 보안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물리적 보안담당자는 출입권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다.
 - ③ 물리적 보안담당자는 분기 1회 이상 등록된 출입권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출입권한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통제구역 중 전산실에 대한 출입신청 및 출입권한 검토는 본 지침 제3장 전산실 보안에 서 정한다.
 - ⑤ 관련 서식은 "(별지 제1호 서식)" 출입권한신청서, "(별지 제2호 서식)출입권한 검토"를 참조한다.
- 제8조(물리적 보호구역 내 작업) ① 클라우드시스템 도입,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신청 및 수행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 - ② 클라우드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내 모바일기기(노트북, 스마트기기 등) 사용 방지 및 불법적인 활동을 모니터링(예: CCTV) 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보안성 검토 등 적법한 절차를 수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무실 등 내부 시설 보호) ①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장비 및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•이행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장소 및 기타 외부시설은 내부 시설로부터 분리하여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미승인 기기(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)의 반출입을 통한 중요정보 유출, 내부망 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 임직원 및 외부인력 모바일 기기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정보처리시설의 배치)** ① 클라우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여야 하다.
 - ②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(배치도, 자산목록 등)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보호설비) ①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,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 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•관리하여야 하며,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 재해(화재 등) 발생 시 임직원이 대피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, 비상등, 비상통로 안내표지 등을 설치•운영하여야 한다.

- ③ 주요 정보시스템을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(IDC)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,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 및 장비의 가용성 및 무결성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전산실 보안

- 제12조(전산실 관리) ① 중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 - 1. 방수, 방화, 방진, 도청 및 외부 침입 방지 등 전산실 요건에 맞도록 시설을 구비한다.
 - 2. 상시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출입문은 이중 안전장치로 보호하여야 하며, 외벽이 유리인 경우 유리창문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3. 화재발생 시 조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 및 자동소화 설비 등을 설치 · 운영한다
 - 4. 자동으로 항온・항습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・운영한다.
 - 5. 전산실의 출입사항은 무인 감시카메라 및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해 사후확인이 가능하도 록 하며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 - 6. 정보통신ㆍ설비 및 시설 목록은 항상 최신의 자료를 유지한다.
 - ② 전산실 담당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관련 서식은 "(별지 제6호 서식)보호설비점검"을 참조한다.
- 제13조(전산실 내 정보시스템의 보호) ① 정보시스템은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건물 외벽과 거리를 두고 배치하고, 가능한 취사시설, 화장실 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배치한다.
 - ② 일시적인 전력중단이나 기타 전기적 이상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비상 발전기, UPS 등 대체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력공급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케이블은 물리적인 차단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.
 - ③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케이블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은 손상이나 도청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.
 - ④ 전산실 내에는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.
 - ⑤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내역과 의심되는 결함은 기록・관리한다.
- 제14조(전산실 출입통제) ① 전산실 상시 출입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한다.

- ② 전산실 상시 출입권한이 필요한 임직원은 "전산실 출입권한 신청서"를 작성하여 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신청한다.
- ③ 정보보호담당자는 신청한 출입권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정보보호책임자의 최종 승인 후 출입권한을 부여한다.
- ④ 정보보호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전산실 출입권한 현황과 출입기록 내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상시 출입권한이 없는 임직원 및 외부인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산실에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후 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출입일시, 출입목적 등을 출입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- ⑥ 전 항의 경우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관련 담당자가 반드시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.
- ⑦ 관련 서식은 "(별지 제1호 서식)" 출입권한신청서, "(별지 제2호 서식)출입권한 검토" 를 참조한다.
- 제15조(전산실 작업) ① 전산실 내에서의 작업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녹화기록을 잠금 장치가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보호담당자는 CCTV 녹화 기록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 1회 이상 정보보호책임 자에게 보고한다.
 - ③ 정보보호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CCTV 녹화기록과 출입대장을 비교하여 검토 결과를 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 - ④ 정보보호담당자는 외부인력 등 출입권한이 없는 자가 전산실 내에서 작업하고자 할 경우 항상 동행하여야 한다.
 - ⑤ 전산실 내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및 폐기 등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작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책 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휴대용 저장매체 및 사무기기 보안

- **제16조(휴대용 저장매체의 관리)** ① 휴대용 저장매체는 회사에서 인가한 저장매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보호담당자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현황을 최신화하여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인가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차단, 모니터링 등의 기술적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③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해 바이러스, 악성코드가 유포되지 않도록 휴대용 저장매체가 연결되는 단말기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- 1. 자동실행 기능 해지

- 2.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사전(자동) 검사
- 3. 숨김파일 및 폴더 등이 표시되도록 PC 등 단말기 옵션 변경 등
- ④ 조직의 중요정보(개인정보, 기밀정보 등)의 경우 휴대용 저장매체 저장을 제한하고 업무상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매체 분실, 도난 등에 따른 중 요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.

제17조(사무기기 보안) ① 공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출력되는 문서는 즉시 회수
- 2.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료만 출력
- 3. 프린터 내 프린트 된 문서가 저장되는 경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관리
- ② 전 항의 경우 정보보호담당자는 중요문서 출력 시 관련 정보(출력자, 출력일시 등)가 표시되도록 프린터의 워터마킹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.
- ③ 복사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- 1.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만 복사
 - 2. 복사 후 원본 및 복사본이 복사기에 남겨져 있지 않도록 관리
 - 3. 복사기 내 복사한 문서가 저장되는 경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관리
- ④ 팩스를 통한 송·수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- 1. 악의적인 용도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금지
 - 2. 문서 생성자가 직접 팩스를 전송하고 전송되는 원본 문서는 즉시 회수
 - 3. 팩스 내 전송한 문서가 저장되는 경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및 관리
- ⑤ 공용 PC 사용
 - 1. 일정 시간 미사용 시 화면 보호 기능을 사용하며 모니터링 등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PC는 예외
 - 2. 로그인 시 암호 설정
 - 3. 개인별 계정을 사용하고 공용 계정을 사용 시 승인 후 사용
 - 4.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
 - 5. 중요 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
- ⑥ 파일서버
 - 1. 부서별, 업무별 디렉토리 접근 권한을 부여
 - 2. 불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

3. 기타 공용 PC의 보안대책 적용

제5장 정보자산 반출・입 관리

- 제18조(장비 반출·입 및 폐기) ① 보호구역 내 중요한 장비, 문서, 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장비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•이행해야 하며, 폐기 및 재사용 시 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③ 자체적으로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해 폐기 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④ 외부업체를 통해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한 폐기에 대한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정보자산 반출·입 관리) 미승인 반출·입을 통한 중요정보 유출, 악성코드 감염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, 보안 구역 내 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장비 반출·입 절차, 절차를 수립하고,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① 정보자산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. 다만, 업무상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전산실 내에 반입 및 반출되는 모든 정보자산은 사전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・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 - ③ 통제구역에서의 정보자산 반출 시 정보자산 반출신청서에 반출 자산명, 반출목적, 반출지, 재반입 예정일 등을 기록하여 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.
 - ④ 통제구역 내에 전산 단말,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다만, 업무상 부득이하게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⑤ 관련 서식은 "(별지 제3호 서식) 자산 반출입 신청서", "(별지 제4호 서식) 자산반출/입관리대장"을 참조한다.
- 제20조(장비 폐기) 장비 또는 저장매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사전 승인 하에 폐기하여야 하며, 폐기처리 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폐기 처리한다.
 - 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는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저장된 정보가 완전하게 제거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.
 - ② 저장매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장비는 폐기되기 전에 데이터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한다.
 - ③ 전 항에 해당하는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에 대한 증적을 기록(폐기이력, 사진 등)으로 유지하고,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전문 파기 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파기를 실시할 수 있다. 이

경우 파기 업체와의 계약은 『인적보안지침』에서 정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파기를 수행한 증명 자료는 관리 부서장이 수령, 보관하여야 한다. ⑤ 장비 및 저장매체에 대한 폐기기록은 (별지 제5호 서식) 자산폐기관리대장을 참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지침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일로(2014년 8월 25일)부터 시행한다.